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
결글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152,360	15,610	0	0
02월	152,360	15,610	0	0
03월	152,360	15,610	0	0
04월	150,540	15,430	0	0
05월	150,540	15,430	0	0
06월	150,540	15,430	0	0
07월	150,540	15,430	0	0
08월	150,540	15,430	0	0
09월	150,540	15,430	0	0
10월	150,540	15,430	0	0
11월	150,540	15,430	0	0
12월	150,540	15,430	0	0
연말정산	-24,300	-2,070		
합계	1,787,640	183,630	0	0
총합계				1,971,27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202,770	0
02월	202,770	0
03월	202,770	0
04월	202,770	0
05월	202,770	0
06월	202,770	0
07월	200,340	0
08월	200,340	0
09월	200,340	0
10월	200,340	0
11월	200,340	0
12월	200,34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접	0	
실업크리	0	
합계	2,418,660	0
	2,418,660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0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(무) 메리츠 운전자.	보험 M-Drive			
보장성	116-81-03	3752	6143817	67	770320-*****	박정현	421,20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개인용 애니카 자동차				
보장성	202-81-45617		120Q32645	70000	770402-****	장덕기	643,80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개인용 애니카 자동차				
보장성	202-81-45617		120F183719	90000	770402-****	장덕기	305,500
	메트라이프생명보험 (주)		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종신보 험				
보장성	120-81-32969		0003482332		770320-*****	박정현	1,388,4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		생활비받는NH암보	험(갱신형,무			
보장성	104-86-39	723	318047019	2863	770402-*****	장덕기	505,680
	DB생명보험	(주)	생활비타는임	암보험			
보장성	202-81-18	158	1032326	51	770320-*****	박정현	363,480
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알파Plus보장보험1001				
보장성	116-81-03	752	6P93281	18	070311-*****	장수연	240,000
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알파Plus보장보	브험1001			
보장성	116-81-03752		6P933373		770320-*****	박정현	344,670
	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		연금저축세테크연금공제(V2)				
보장성	104-86-39	723	501109018096394		770320-*****	박정현	40,8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0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신한생명보험 (주)		참좋은암보험미	us[갱신형]			
보장성	104-81-28	992	00108716	092	770320-****	박정현	144,240
	신한생명보험 (주)		참좋은치아보	참좋은치아보험Plus			
보장성	104-81-28	992	00109749	731	770320-****	박정현	452,400
	흥국화재해상보험 (주)		탄생기쁨플러스보험(0804)				
보장성	102-81-07837		4080302737	70000	080702-****	장다연	339,384
	770320-****	박정현					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프로미카개인용				
보장성	201-81-45	593	220201575933000		440908-****	박만순	781,860
_	인별합계금액		5,971,		5,971,414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305-29-33542	나래온누리약국	일반	7,600
406-83-01137	무주군보건의료원	일반	8,600
314-82-01199	(의) 영훈의료재단	일반	1,497,010
305-82-10321	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	일반	7,400
301-20-47906	태양당약국	일반	31,500
305-82-14725	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선치과 병원	일반	20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572,21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572,21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6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수익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정현	770320-2481218
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기	수령금액 계	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피보	.험자	T804/1
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 회사	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001	770320-2481218 박정현		1,022,190
116-81-03752	6P933373	770320-*****	박정현	1,022,190
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신종단체상해보험(Ⅱ)	106-83-03216	국방부본부	391,820
202-81-45617	00082010995056000	770320-****** 박정현		391,020
인별합계금액				1,414,01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정현	770320-248121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25,145,210	114,200	71,850	381,200	25,712,460
3월분	2,147,634	0	0	64,800	2,212,434
4~7월분	7,569,929	0	0	86,500	7,656,429
그외 (1~2월,8~12월분)	15,427,647	114,200	71,850	229,900	15,843,597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(- -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4,182,200	722,600	850,880	489,180	
신용카드	롯데카드 주식회사 (120-81-54231)	일반	236,700	287,290	255,770	373,920	8,358,500
			205,400	336,130	160,840	257,590	
			0	0	0	0	
신용카드	롯데카드 주식회사 (120-81-54231)	전통시장	0	0	0	16,000	50,100
			34,100	0	0	0	
			0	37,800	10,800	68,100	
신용카드	롯데카드 주식회사 (120-81-54231)	도서공연등	0	0	0	0	116,700
			0	0	0	0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정현	770320-248121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54,300	54,300	54,300	54,300	
신용카드	삼성카드주식회사 (202-81-45602)	일반	54,300	54,300	54,300	54,300	651,300
			54,300	54,300	54,300	54,000	
			1,880,009	629,258	1,242,454	995,389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일반	2,016,199	2,314,541	757,660	948,029	16,135,410
			521,129	2,102,559	1,393,244	1,334,939	
			0	0	0	0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전통시장	0	0	0	64,100	64,100
			0	0	0	0	
			71,850	0	0	0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대중교통	0	0	0	0	71,850
			0	0	0	0	
			114,400	0	54,000	0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도서공연등	0	18,400	0	0	264,500
			36,000	11,700	30,00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정현	770320-248121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3,861,360	6,300	0	0	3,867,660
3월분	310,640	0	0	0	310,640
4~7월분	2,047,000	6,300	0	0	2,053,30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,503,720	0	0	0	1,503,72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211,370	343,420	
직불카드 등	나이스정보통신(주) (220-81-15770)	일반	263,840	375,620	575,420	469,900	3,020,640
			515,070	266,000	0	0	
			0	0	0	6,300	
직불카드 등	나이스정보통신(주) (220-81-15770)	전통시장	0	0	0	0	6,300
			0	0	0	0	
			0	0	99,270	193,400	
직불카드 등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일반	119,800	124,500	51,000	0	819,870
			0	231,900	0	0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박정현	770320-248121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0	0	0	0	
직불카드 등	새마을금고중앙회 (109-82-04731)	일반	0	0	0	0	20,850
			0	0	0	20,85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박정현	770320-2481218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2,067,350	0	0	0	2,067,350
3월분	1,500	0	0	0	1,500
4~7월분	437,780	0	0	0	437,78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,628,070	0	0	0	1,628,07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32,300	4,900	1,500	11,900	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380,810	19,070	26,000	221,810	2,067,350
	773,400	431,120	101,570	62,970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연금저축]

(조회기간 : 2020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연금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당해연도 당해연도 납입액 중 납입금액 인출금액		순납입금액	
계좌번호		납입금액	인출금액		
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	104-86-39723	1 200 000	0	1 800 000	
501109018096394		1,800,000	0	1,800,000	
순납입금	· 구액 합계			1,800,000	

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
-13-

- 1. 연금저축(2001.1.1. 이후 가입)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
- 2. 세액공제 대상금액 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- 4.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취급기관별)내역 [주택마련저축]

(조회기간: 2020년 01~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박정현	770320-2481218	

■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계좌번호	저축구분	저축명	가입일자	납입금액 계
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3491142886181	주택청약종합저축	주택청약종합저축	2015-04-15	600,000
합 계					600,000

- 1. 공제대상 :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,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(청약저축,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,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의 40%(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)
- ※ 2014.12.31.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
- ※ '09.12.31.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(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)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
- ※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
- ※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 단,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

-14-

2. 공제한도 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